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,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 임

3. 주요내용

- 8개 리·통 증설(안 별표2, 별표13, 별표14, 별표25, 별표27)
 - 통·리 : 587개 통리(통 420, 리 167)
→ 595개 통리(통 427, 리 168)
- 55개반 증설, 1개반 폐지(안 별표9, 별표12, 별표14, 별표25, 별표27)
 - 반 : 4,215개반 → 4,269개반(54개반 증설)
- 구역변경(안 별표16, 별표24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 제22조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는 587개 통리에서 고아읍 1개리, 도량동 1개통, 선주원남동 1개통, 인동동 2개통, 양포동 3개통 등 8개통리의 증설로 595개 통리로 조정하였고
- 반은 4,215개반에서 지산동 중 1개, 선주원남동 중 16개, 인동동 중 20개, 양포동 중 18개 등 55개반을 증설하면서, 송정동 1개반을 감하여 총 54개반이 증가된 4,269개반으로 조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아파트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생활권과 일정기준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통리반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